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구비서류

※ 아래 제반 제출서류는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2025.07.25.)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제출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기존주택 처분조건 (해당자)	기존주택처분관련서약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3조 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3 특별공급 신청요건 등에 관한 특례, 제 3항 출산특례 당첨자 제출 [양식] 당사 건분주택 비치, 해당자에 한하여 서약서 작성 예정
필수서류	확약서, 서약서	-	[양식] 당사 건분주택 비치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여권정보증명서 등 당첨자 본인확인용(모바일 신분증 불가)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본인발급), 본인에 한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가능 ※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시 “발급용도(직접 작성) : 서류제출 및 계약 / 제출처 : 제기동역 아이파크”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인감도장 일치 여부 확인)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주민등록번호(본인 및 세대원 모두 뒷자리 전부표기), 주소 변동사유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유·사유 및 발생일(인정 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하여 “상세”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하여 “상세”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만 65세 이상의 피부양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사실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유, 세대주 및 관계 등 모든정보 표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하여 상세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본인 및 부양가족	공고일 및 부양기간 동안의 국외거주사실 확인(본인 및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직계존·비속 전원) 출생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출입국기록 포함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단신부임은 입주서류 및 세대원 전원의 출입국사실증명 제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가점산정기준표	-	[양식] 당사 건분주택 비치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관계, 발생일·변동사유 등 모든정보 표시 발급)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배우자가 재외동포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하여 상세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사실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유, 세대주 및 관계 등 모든정보 표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하여 상세 발급)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24.06.19. 이후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경우(출산특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하여 상세 발급)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24.06.19. 이후 출생 예정인 태아가 있는 경우(출산특례)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양식] 접수장소 비치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또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지역의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10년 이상 명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25년 이상 명시)
제 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본인 외 모두)	위임장	-	[양식] 당사 건분주택 비치 (당첨자의 인감도장을 날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당첨자)	용도 :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위임용(본인 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신분증	대리인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여권정보증명서 등 대리인 본인확인용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은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
부적격의심자 추가서류	부적격 소명서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외 단신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서류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본 안내문에 반영된 내용은 관계법령의 개정, 정부정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함.

※ 상기 서류는 당첨자의 적격 여부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이므로,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하며, 당첨자의 상황에 따라 상기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상기 서류는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어야 하며, ‘상세’발급을 원칙으로 함. 또한, 주민등록표등(초)본에 ‘주소변동사유 및 사유’, ‘세대주와의 관계’ 등이 포함되어야 함.